

재료공학부 다전공 이수에 관한 세칙

제정 2009. 01. 01
개정 2010. 02. 18
개정 2020. 03. 09
개정 2020. 09. 04

제 1 조 (목적)

이 세칙은 재료공학부 학생이 타 학과/학부를 다전공(복수전공, 연합전공, 부전공, 연계전공, 학생설계전공)하는 경우 및 타 학과/학부 학생이 재료공학부를 복수전공하는 경우와 부전공으로 하는 경우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공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재료공학부 학생이 타 학과/학부를 다전공(복수전공, 연합전공, 부전공, 연계전공, 학생설계전공)하는 경우)

1. **2008년~2019년** 재료공학부 입학생은 아래 이수 형태 (1) 혹은 (2)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.
 - (1) 재료공학은 단일 전공으로 이수하려는 학생들은 62학점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.
 - (2) 재료공학을 주 전공으로 이수하고, 타 학과/학부를 다전공(복수전공, 연합전공, 부전공, 연계전공, 학생설계전공)하려는 학생들은 재료공학부 개설 전공교과목 중에서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2020년 입학생부터는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.
 - (1) 재료공학을 주전공으로 이수하고, 타 학과/학부를 복수전공, 연합전공하려는 학생은 재료공학부 전공교과목 중에서 전공필수(36학점)를 포함하여 4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 - (2) 재료공학을 주전공으로 이수하고, 타 학과/학부를 부전공, 연계전공, 학생설계전공하려는 학생은 재료공학부 전공교과목 중에서 전공필수(36학점)를 포함하여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2. 졸업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.
3. 이 규정은 2009년 이후 2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들과 2010년 이후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.
단 편입하는 학생들이 편입 이전에 이수하였던 교과목 중에 대체 가능한 교과목들은 학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수 면제가 가능하다.

제 3 조 (타 학과/학부 학생이 재료공학부를 복수전공하는 경우)

1. 2007년 이전 입학생은 재료공학부로 입학한 학생들과 동일한 전공 이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.
2. **2008년~2019년** 입학생은 복수전공에 대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은 2 종류의 이수 형태 중에서 택할 수 있다.
 - (1) 재료공학부 개설 전공교과목 중에서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54학점 이상을 이수한다.
 - (2) 재료공학을 단일 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전공 이수 규정에 따라 전공교과목을 이수 한다.
3. **2020년** 입학생부터는 재료공학부 전공교과목 중에서 전공필수(36학점)를 포함하여 4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타 학과/학부 학생이 재료공학부를 부전공하는 경우)

1. 2007년 이전 입학생은 재료공학부 개설 전공교과목 중에서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2. 2008년 이후 입학생은 재료공학부 개설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다만, 전공이수학점 21학점 중 4개 과목이상은 전필과목으로 꼭 이수해야한다.

부 칙

1. 이 세칙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세칙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세칙은 2020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.